

이어도 논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중국어 자료에 나타난 주요쟁점들을 중심으로

주민욱*

- I. 서론
- II. 중국의 이어도 연구
- III. 이어도 논쟁과 한국의 자세
- V.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의 주목적은 중국의 이어도 논쟁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다. 중국이 이어도 해역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양국 간 잠재하고 있는 갈등과 그 정도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중국의 이어도 논쟁 관련 논문 및 언론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중국은 주변해역에 대한 활용능력을 높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도 해역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어업자원이 존재하고 있음은 물론 지리적 입지도 매우 우수하다. 하지만 양국의 이어도 해역에 대한 해양구획 획정 원칙은 중간선원칙과 자연연장선원칙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제 3자의 개입을 통해 국제해양법으로 문제를 풀기에는 사안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 중국은 일본과의 조어도 분쟁에서도 살펴 볼 수 있

* 무한대학교(武漢大學) 박사.

듯이 이어도 해역 역시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어도 해역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계속 강경할 것이며, 자신들의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는 형태 역시 매우 직접적일 것이다. 이에 우리들은 이들의 이어도 해역에 대한 적극적 태도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국의 해양 원칙 및 국민정서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들의 주장을 반박 할 수 있는 객관적 언어자료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중국, 이어도 논쟁, 해양구획 획정, 자연연장선원칙, 중간선원칙.

I. 서론

동아시아 내 이어도 해역에 대한 논쟁은 단순히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개발권 혹은 이 해역의 관할권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현재는 주변국 간의 확고한 입장 차에서 나타나는 영토문제, 즉 소유권 문제로 비춰지고 있다. 중복 해역을 맞대고 있는 국가 간 해양구획 획정이 일반적으로 중심선을 긋는 방향으로 상호 조정되고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양국 간 해양선 거리, 국토면적 그리고 인구비율 등을 근거로 해양선을 구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은 늘 해당 해역의 정치·경제·사회·역사 문제 등과 맞물려 있다. 이어도 해역은 이러한 모든 논쟁에서 가장 대표성을 띄는 해양논쟁 사례 중 하나이다. 이어도 해역은 한중일 삼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¹⁾ 이중 한중 양국 간의 이 해역에 대한 관할권 논쟁은 양측이 주장하는 상이한 구획 방법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의 풍부한 어업자원 및 천연자원, 군사·지리적 입지 그리고 주변국에 대한 반감여론 등을 매개로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2006년 한중 양국은 이어도가 수면 아래의 수중암초임을 상호 합의

1)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일본은 1969년 일본 항공자위대의 방공식별구역(JADIZ)을 선포하였다. 중국은 2013년 11월 23일, 동중국해에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설정하였고, 한국은 2013년 12월 8일, 해당 해역에 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발표했다.

하였고, 이어도 해역에 대한 양국 간의 논쟁은 영토권 주장에 대한 것이 아님을 상호 확인하였다(曹玮,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이어도 해역에 대한 논쟁은 언제 터질지 모를 화약고로 비춰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이어도 해역 관측 및 탐사에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중국 연구자에 의하면 한국의 일부매체가 “이어도는 한국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이를 묵인 또는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²⁾ 한국정부는 이어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국은 현재 일본과의 조어도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다. 일본의 이 지역에 대한 국유화 작업을 ‘점령’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물론 대만 역시 일본의 이러한 일방적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상의 모든 행위를 ‘불법적 행태’로 단정 짓고 있다(王秋雯·姜政揚, 2012). 이 시점에 한중 간 이어도 문제는 중일 간 조어도 해역 영토문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덜 회자되거나, 혹은 이와 반대로 이전에 비해 더욱 빈번하게 논의될 여지가 크다. 중국이 일본과의 조어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음은 곧 앞으로 발생할 이와 유사한 분쟁에 대한 사전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만큼 이어도가 양국 간 해양구획 논쟁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한중 간 해양갈등이 “한중 양국 각각 일본과의 갈등에서 나타나는 모순보다는 깊지 않고, 보통 주변국 간 종종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안임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³⁾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설득력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 이어도 문제에 대한 논의는 중국의 생각을 사전에 이해하는 목적이 크다. 여기서의 중국은 중국정부 혹은 공산당 정책을 기반으로 이어도 문제를 해석하는 관련 연구자의 견해일 것이다. 이로 인해 학자들의 관점이 곧 중국정부의 관점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정책기조와 중국 연구자의 연구내용의 높은 상관성을 매개

2) 楊紅偉, 「國際法視角下的中韓蘇岩礁之爭」, 『法治視野』 第6期, 2009, 76쪽.

3) 許壽童, 「日本的歷史認識問題與東亞國家的應對策略」, 『東疆學刊』 第31卷 第2期, 2014, 72쪽.

로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미래전략을 예측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이 민감한 시기에 한중 간 이어도 문제를 연구주제로 다루는 것은 실-갈등악화-보다는 득-사전대비-이 클 것으로 보인다. 상대가 이어도 해역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상대의 반발의 방향과 그 정도를 예측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이어도 논쟁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고자 함에 그 주목적이 있다. 중국의 이어도 논쟁 관련 연구는 물론 관련 언론자료를 토대로 이 해역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 입장 및 그 견해를 한데 정리하고자 한다. 중국어 자료를 근거로 이들의 생각을 가늠한 본 연구가 앞으로 더욱 부각될 양국 간의 해양구획 획정 논쟁을 예측하는데 나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중국의 이어도 연구

본 연구에 필요한 중국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중국의 대표 포털사이트인 바이두(<http://www.baidu.com>), 그리고 종합형 인터넷 신문사로는 신랑왕(<http://news.sina.com.cn>), 신화왕(<http://www.xinhuanet.com>), 환구왕(<http://www.huanqiu.com>)을 활용하였다. 바이두는 중국인에게 한국의 네이버(NAVER)에 버금가는 인지도를 갖고 있고, 전 세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중문 검색사이트이다. 그리고 상술한 신문들은 해당 신문업 집단(報業集團)의 핵심 신문사로써 다양한 형태의 신문사 및 출판사 등을 관리하는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들을 통하면 중국 내 중국어 자료 대부분을 수집하는데 무리가 없다.⁴⁾

검색기간은 2016년 1월 10-12일, 3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후 수집된 자료를 관련 연구주제별, 날짜별로 정리하였다. 검색어는 ‘蘇岩礁’, ‘離於島’, ‘Socotra Rock’, ‘自然延伸原則’ 그리고 ‘中間線原則’이었다. 기

4) 산술적으로 관련 데이터 대부분을 수집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는 연구자의 노력 및 정보수집 범위의 확대를 통해 보충해야 할 부분이다.

간 내 관련 논문 및 기사들을 모두 살펴보고, 중복된 자료를 제외 한 해당 중국어 자료들을 선별하였다. 본 연구내용에 활용된 신문기사의 경우 이들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수조사를 목적으로 검색, 수집하였다. 그리고 관련 학술논문은 첫째 이 곳 바이두가 제공하는 학술창고(文庫)에서 유·무료의 중국어 자료를 다운 받았다. 둘째 바이두에 링크 된 유료 학술지 제공 사이트⁵⁾를 활용하였다.

1. 이에도 논쟁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

1) 중국의 해양권력 강화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중국은 전 세계 4번째로 긴 대륙해안선 1.8만km와 1.4만km에 달하는 도서지역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이 수치만을 본다면 해양대국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규모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해양자원 활용 능력을 보이고 있다. 세계 어업자원 총량은 6억 톤, 인구 당 평균 0.12톤인데 반해 중국은 어업자원 총량이 480만 톤이며, 이는 인구 당 평균 0.004톤에 불과하다. 대륙붕의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 역시 전 세계 평균의 1/2에도 못 미치는 활용수치를 보이고 있다.⁶⁾ 중국 입장에서 이러한 낮은 수치는 쉽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일 것이다. 세계경제의 중심을 지탱하고 있는 한 축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국이지만, 천연자원의 보고인 주변해양에 대한 활용에 있어서는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왜 주변해역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들 주변해역에 대한 활용 능력을 높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하는 중국의 노력이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주변국과의 해양패권 경쟁에서 이들 국가보다 앞서기를 바라고 있다.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규모 확대에 힘쓰고 있음은

5) 豆丁网(<http://www.docin.com>), 万方数据(<http://www.wanfangdata.com.cn>), 維普网(<http://www.cqvip.com>) 그리고 中國知网(<http://www.cnki.net>).

6) 劉艷, 「從中日東海之爭談我國海洋權益的維護」, 『海洋開發与管理』 第2期, 2006, 78-79쪽.

물론 현대화 작업에 전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역시 이와 더불어 독자적인 해상무기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한일 양국은 미국과의 우호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여 동아시아 내 북한을 포함한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해양 획정 논쟁은 존재하지 않지만, 동아시아 해양권력 문제에 미국의 개입을 극도로 견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何蘭, 2010).

호어란(何蘭, 2010)에 의하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기본 전략은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 대한 패권을 획득하고자 함에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력을 증강시켜, 이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자 함은 곧 아시아 지역에 대한 자신들의 안보체제를 확고히 하고자 함에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중국은 자신들과 주변 국가들 간의 해양 획정 논쟁에 있어 그 배후에는 미국이 존재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중국과 상대국과의 해양논쟁에 미국이 개입하여 이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굉장히 지능화된 전략이다(李靖宇 외 2, 2013). 미국은 직·간접적으로 이들 논쟁에 개입하고 있으며, 중국이 주변 논쟁 국가와의 해양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을 더욱더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표면적으로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미국과 동맹국가이거나 미국에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호관계를 활용한다면 중국과 북한을 언제든지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 실제 중국의 모든 대륙봉은 주변 8개 국가⁷⁾와 연결되어 있고, 이들 모든 국가와 해양획정 논쟁을 벌이고 있다(傅成, 2004). 동아시아 국가와 동남아시아 국가 모두 적어도 영토문제에 있어서 중국에 우호적일 수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중국과 주변국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것도 사실이다. 만약 상호 국가 간 어떠한 형태에서 시작되든 그것이 물리적 충돌로 발전했을 때의 미국의 개입은 중국과의 전면전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한국, 일본, 북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하여) 중일 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은 일본의 동맹국으로서 해당 논쟁에 개입하여 중국과 대면해야 하는 사실을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 ... 설사 중일 양국 모두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원치 않고는 있지만, 어떠한 의외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며, 그것이 양국 간 대규모의 군사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⁸⁾

그리고 중국은 현재 한중 이어도 문제, 중일 조어도 문제 그리고 중국 남해 해역의 주변국과의 해양 획정 논쟁 외에도 비록 직접 대면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주변의 여러 잠재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韓增林 外 4, 2015). 중국은 한일 간 독도 문제는 물론 러일 간 쿠릴열도 문제, 한반도의 핵위기 등 모두 간접적으로 중국 해안연안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2) 자연연장선원칙 vs. 등거리원칙

한중일(韓中日) 삼국 간 동중국해 논쟁은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다. 각자의 입장은 상호간 거리감이 상당하며,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해양획정 범위는 상당부분 중복되어 있다(李毅, 2005).

“(해당 국가 간 해양구획 획정에서) 기존 국제해양법 관례에 의하면 잠정적으로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는 등거리원칙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측이 주장하고 있는 원칙과 일맥상통하다. 하지만 중국측은 이와 달리 중국 대륙에서 자연 연장된 부분을 기준으로 해당 해역을 구분 지으려 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한다면 이어도 해역은 자연스럽게 중국 본토의 자연연장의 한 부분이 된다.”⁹⁾

8) 2013년 11월 25일, <日美或“无视”中國防空識別區>, 《參考消息網》.

“隨着爆發衝突的可能性增大, 美國開始擔心自己作爲日本的盟國也許會卷入與中國的爭端中。...即使中國和日本都希望避免直接開戰, 但任何意外事件都有可能升級爲更大規模的軍事衝突。”

9) 2012년 04월 17일, <韓媒稱國際法庭裁決蘇岩礁可能利于韓方原則>, 《環球時報》. “國際海洋法法庭可能適用暫定中間等距離線的原則。這與韓方主張應該適用的原則相一致。而中國則主張中國大陸自然延長部分均爲自身海域, 因此蘇岩礁是中國本土的自然延長。”

상술한 기사 내용은 한국에서 이미 보도된 신문 기사를 중국에서 번역하여 재보도한 내용임으로 해서 중간선원칙이 자연연장선원칙에 앞서는 것처럼 쓰여 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 자체 취재로 쓰여진 기사를 살펴보면, 자연연장선원칙만이 해양구획획정에 적합한 유일한 원칙임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해양발전연구센터의 연구원에 따르면 이어도 귀속문제와 관련하여 거리가 멀고 가까움은 주요 근거가 되지 않는다. 해안선은 일반적으로 도서해안선과 대륙해안선이 존재하는데, 도서해안선은 효력이 없거나 절반의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해양구획 획정에서 이 선은 대륙해안선에 비할 수 없다. 한국은 도서해안선(한국 최남단 마라도)을 기준으로 하지만 중국은 대륙해안선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국제관례상 대부분 이를 주요원칙으로 하고 있다.”¹⁰⁾

두 기사를 통해 한국 측은 줄곧 이어도 해역의 귀속문제와 관련하여 중간선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국 측은 자연연장선원칙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중국의 주장에 근거하면, 자연연장선원칙을 근거로 하되, 도서지역 보다는 대륙 해안선을 그 기준으로 해양구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곧 중간선원칙의 개입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음과 더불어 양국의 이어도 해역에 대한 해양획정에서 섬, 즉 제주도의 지위를 대륙의 반박에 인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설사 국제사회 관례상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가정하더라도 해양 영토분쟁에서 ‘자연연장선원칙을 적용할 시’라는 전제조건이 우선적으로 만족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 국가 간 특수한 상황에서 대륙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양구획을 획정할 수 있다는 대전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마치 기존 국제해양법 관례들에 따르면, 중간선원칙 보다는 자연연장선원칙이 우선시 된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을 뿐이다.

10) 2012년 09월 24일, <韓國議員再炒蘇岩礁問題 鼓動政府警戒應對中國>, 《環球時報》.

“中國海洋發展研究中心研究員郁志榮曾在接受《環球時報》記者採訪時表示, 遠近根本不是划分蘇岩礁歸屬的主要依据。他說, 海岸線分爲島嶼岸線和大陸岸線兩種。島嶼岸線可能无效或者半效, 它在划界的地位比不上大陸岸線。韓國依据的正是島嶼岸線, 而中方依据是大陸岸線, 這也是國際慣例大多采用的原則。”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미 자연연장선원칙을 통해 동중국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도 예측하고 있다(張衛彬, 2010). 자연연장선원칙이 대륙붕을 획정하는 기본원칙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판례들을 근거로 예측하자면, 이 원칙은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할 수 있는 자연연장선원칙을 근간으로 비례원칙(比例原則)을 끝까지 적용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중국은 1998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배타적경제수역과대륙붕법> 제2조 규정을 근거로 등거리원칙(等距離原則)이 아닌 자연연장선원칙(自然延長線原則)을 줄곧 주장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륙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이외 본국 영토로부터 자연 연장된 모든 지역까지를 의미한다.’¹¹⁾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은 자연연장선원칙이 대륙붕과 관련된 모든 법률상에 명시된 가장 기본적인 해양 획정 원칙이라 주장하고 있다(萬震, 2010). 만약 양국 간 대륙붕에서의 해양 획정 논쟁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해저지형에 대한 관찰, 해당 국가들의 해안선 길이 그리고 역사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영토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양국 간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양 획정을 하는 등거리원칙은 법적 강제성이 없고-비협약국에 한해-, 양국 간 특수한 상황이 인정될 시에만 활용 가능한 원칙으로 인지하고 있다.

동중국해에 대한 한중일 간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 획정에서 중국은 자연연장선원칙을 끝까지 고수할 것이다(孫傳香, 2010). 등거리원칙 보다는 자연연장선원칙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이 보다 크기 때문에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하며, 한일 양국이 주장하는 중간선원칙을 받아들일 확률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중국과 해양구획 논쟁을 벌이고 있는 여타의 국가들과의 협상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해당 해안선의 비율을 기준으로 동중국해를 획정하려

11) <中華人民共和國專屬經濟區和大陸架法> 第2條 規定.

‘中華人民共和國的大陸架，爲中華人民共和國領海以外依本國領土的全部自然延伸，擴展到大陸架邊外緣的海底區域的海床和底土；如果從測算領海寬度的基線量起至大陸邊外緣的距離不足二百海里，則擴展至二百海里’

하고 있다지만,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은 한일 양국의 양해가 우선이며, 등거리원칙 주장을 포기할만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張衛彬, 2010).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하려 든다면,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올 뿐이다.

3) 국제해양 판례와 이어도 논쟁

중국의 해양 획정 관련 논문을 살펴볼 때,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 중 하나가 해외 사례를 통해 중국 측 주장의 당위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 또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할 시, 그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첫째 기존 판례에서 해당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을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孫傳香, 2010). 두 번째는 해양 획정 시 활용되는 기준이 자연연장선원칙인가 혹은 등거리원칙인가이다(明廷權, 2008).

그리고 이들 연구가 이어도 논쟁과 접목되면 전자는 후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의 성격을 보인다. 즉 이어도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위치한 명백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에 기존 대륙붕을 통한 해양 구획 획정 판례를 가지고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획정 문제인 이어도 논쟁을 희석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결같이 주변국과의 해양논쟁에서 자연연장선원칙의 대륙붕을 근거로 해양획정 문제를 풀어가고자 한다. 이들에게 있어 대륙붕은 언제나 주변국과의 해양획정 문제의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이 이러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내세우는 국제법 조항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1항에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이외에 육지의 끝에서 해양으로 뻗은 자연연장의 전부이다. 즉 대륙붕의 범위는 연안국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좇아 대륙 주변부의 외단까지 연장되어 있는 해저, 만약 그 외단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에서 끝나는 경우에는 200해리까지의 해저로 한다는 새로운 정의를 도입하고 있다.¹²⁾

국제사법재판소의 1984년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메인만(Gulf of Maine)

에 대한 해양 경계선 획정이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대한 해양 획정 논쟁은 꾸준히 등장한다. 1992년 프랑스-캐나다 간 해양 획정 논쟁, 1993년 안마옌 섬(Jan Mayen)을 두고 그린란드-노르웨이 간 영토분쟁, 1999년 에리트레아-에만 사안, 2001년 카타르-바레인 사안, 2002년 카메룬-나이지리아 사안, 2006년 트리니다드토바고-바베이도스 사안, 2007년 가이아나-수리남 사안, 2007년 카리브 해 지역의 영토와 해양 획정과 관련된 온두라스-니카라과 사안, 2009년 루마니아-우크라이나의 흑해 중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획정에 대한 논쟁 등이 대표적이다(馮浩茵, 2010).

평지에한(馮浩茵, 2010)에 의하면 이러한 논쟁들이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등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판례 역시 어느 하나의 원칙을 기준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것도 아니며, 그 실행 의무 역시 강제성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판례들을 종합하면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분쟁 중 한국과 일본이 주장하는 등거리원칙에 의한 해양 획정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동해와 황해 해역에 대한 해양획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중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중국이다(李軍·王傳劍, 2010). 국제사법재판소는 물론 국제해양법정에 중국 국적의 법관이 활동하고 있어 본인들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의 해양획정 문제를 양국 간의 대화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양국 간의 입장차가 너무도 크다보니 10여년이 넘는 협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내지 못했다. 따라서 국제법원 혹은 국제해양법정의 강제절차에 의한 해결방식 역시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1984년 이래 국제법원에는 중국 국적의 법관이 줄곧 활동해 왔으며, 국제해양법정에 역시 중국인 법관이 존재한다. 이들 국제조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비교적 익숙하다.”¹³⁾

12) 김현정, 「200해리 이원 대륙붕 제도의 두 가지 쟁점」, 『국제법평론』35권, 2012, 114쪽.

13) 李軍·王傳劍, 「中韓相鄰海洋權益問題研究」, 『太平洋學報』第18卷 第12期, 2010, 75쪽. “雖然我國在海洋划界中一直主張由雙方談判解決, 但是由於我國跟韓國的分歧一直較大, 經過十幾年協商, 仍然沒有實質性進展。所以, 選擇國際法院或者國際

하지만 기존 국제 사례 등과 마찬가지로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제 3자의 개입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기에는 사안이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다. 이러한 일련의 갈등들을 단순하게 국제해양법으로 해결하기에는 사안이 복잡하고, 법률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양국 간의 관계는 물론 심지어 국제사회의 평화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張光, 2007).

2. 이어도 논쟁과 중국의 입장

1) 이어도 해역에 대한 인지

과거 해양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의 중국은 해양문제를 중시해야 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한중 양국 간에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이렇다할만한 해양구획 논쟁이 존재하지 않았다. 과거 동해와 황해를 넘나들며 다방면에서 양국 간 밀접한 상호교류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성장과 발맞추어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중국은 자연스레 해양자원개발 및 활용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고, 관련 해양개발 기술들이 확보되기 시작하였다(詹德斌, 2013). 이와 더불어 국제해양법의 발전과 이에 대한 양국의 인식정도가 깊어지면서 각자만의 해양권익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양국 간의 해양구획 논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극명하게 대립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양국의 우호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가고 있다(李軍·王傳劍, 2010).

이에 2000년 한중 양국은 상호 해양권익을 보호·존중하기 위해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쌍방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 및 어업가능 지역을 구획하여 양국 각각의 어업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李軍·王傳劍, 2010).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을 감싸고 있는 황

海洋法庭的強制程序仍不失爲一種較好的方式。自1984年來國際法院一直有中國籍的法官，在國際海洋法法庭也擁有本國國籍的法官，對於這些國際組織的爭端解決程序也較爲熟悉。”

해 해역은 잠정조치구역(暫定措置水域)과 과도수역(過渡水域)으로 설정하였고, 이어도 해역은 과도수역으로 설정하였다.

중국은 1963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이어도 해역에 대한 측량, 조사를 실시하였다(楊紅偉, 2009). 2만2천톤급 화물선 ‘약진호(躍進號)’가 이어도 해역에서 침몰하였는데, 그 해 중국 해군과 교통부는 이 주변 해역에 대한 정밀검측을 실시하였고, 중국 해도(海圖)에 보다 정밀한 위치를 제공하였다.¹⁴⁾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에 이어도가 중국영토임을 공식적으로 공표하였다. 이후 1992년 5월 중국해군에 의해 다시 한번 보다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졌으며, 그 정확한 위치를 동경 125도 10′ 45″, 북위 32도 7′ 42″로 최종 확정하였다.

한국의 경우 이어도 해역에 대한 실질적 측량이 1984년에 이루어졌으니 이에 비하면 20년이나 앞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역사적으로도 중국이 한국에 비해 이어도에 대한 인지가 훨씬 앞서고 있음을 함께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최종목표가 “본인들의 역사사료(史料)를 근거로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및 황해에 대한 소유권 확보”에 있음을¹⁵⁾ 다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다.

“한국은 이어도에 대한 이해가 중국에 비하면 훨씬 뒤쳐진다. 1880-1890년, 이어도 위치는 북양함대의 해로도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¹⁶⁾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해로도가 제시되어야 하지만 주장과 달리 이를 함께 제시하고 있는 중국어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당시 북양함대¹⁷⁾가 상대적으로 북부인 산둥지역을 수

14) 하지만 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 측량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공개하여 성공여부와 더불어 정확한 측량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5) 李軍·王傳劍, 앞의 논문, 76쪽.

16) 2006년 11월 25일, <韓國欲爭東海蘇岩礁>, 《金羊网-新快報》.

“韓國對蘇岩礁的了解要遠遠晚於中國。1880至1890年，蘇岩礁的位置被明確標注在清朝北洋水師的海路圖中。”

17) 북양함대는 청나라 후기 창설된 3개의 근대화 해군함대 중 화력과 규모가 가장 뛰어난 함대였다. 이 함대는 산둥 위해(威海)시에서 약 4km 떨어진 유공도(劉公

호하고 있었던 반면 남양함대의 경우 해군기지를 상해와 남경에 두고 이 주변해역에 대한 방위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 만큼 이어도 해역을 접할 기회는 북양함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록 북양함대가 당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지만, 남양함대 역시 북양함대에 버금가는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이어도 해역에 대한 탐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만약 실제 탐사가 이루어졌다면 관련 해로도를 상호간 공유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이후 1909년 남·북함대 및 여타의 함대들과 합병·재편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¹⁸⁾

2) 이어도 해역의 가치

중국은 길게 뻗은 해안선과 그 주변 해역의 경제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변국과 해양구획 획정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周江, 2011). 이 곳 해저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어업자원 및 미생물자원 확보 그리고 국토안전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들 주변 해역들이 중국에게 의미하는 정도는 상당하다(王秋雯·姜政揚, 2012). 따라서 중국에게 있어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획정은 단순한 선긋기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어도 해역이 한국의 관할권 안에 편입되는 것에 대한 중국의 우려 역시 무엇보다 이 곳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자원 때문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이어도 해역에 대한 조사연구가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자원개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행위가 본인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져올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

“1982년에 제정된 국제협약 규정에 따르면 대륙붕은 대륙연안 해저의 자연

島)에 함대 본부를 두고 이 해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1894년 중일 간 갑오전쟁이 발발하여 전군이 전멸하다시피 대패하였다.

18) 1909년 북양함대는 남양함대(南洋水師), 복건함대(福建水師) 그리고 광둥함대(廣東水師) 등과 함께 합병되어 순양함대(巡洋艦隊)와 순강함대(巡江艦隊)로 재편되었다.

연장선으로서 가장 멀게는 대륙 해안선에서 200해리 범위 내의 지역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300만 평방킬로미터 해양국토 중 황해와 동해 대륙붕의 (상당부분이) 자연스레 중국에 포함된다. 하지만 한국 측은 중국의 어떠한 양해도 구하지 않은채 이 지역(황해와 동해)에 대한 석유자원 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해양주권과 해양권익에 이미 (상당한) 손해를 미치고 있다.¹⁹⁾

“동해면적의 77만 평방킬로미터는 한중일 삼국에 모두 겹쳐있다., (그리고) 이어도 해역에 대한 이들 주변국(한중일) 간 논쟁 이면에는 황해와 동해 주변 해역에 매장되어 있는 풍부한 해저자원 귀속문제에 대한 실질적 이익문제가 관계되어 있다.”²⁰⁾

중국은 이어도 해역이 양국의 해양 획정에 있어 중복된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이 지역에 대한 해양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불만을 품고 있다. 중국의 주장에 근거하면 이 지역은 중국 대륙붕 해저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한국의 이 해역에 대한 일련의 모든 행위들을 “남의 것에 손을 대려는 불법행위”라고 단정 짓고 있다.²¹⁾

한중 간 이어도 주변해역의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을 획정하는 과정 중 양국의 입장차는 분명할 수 밖에 없다. 양국은 어업, 해저자원개발, 해양과학연구, 해양환경보호 등 해양권의 방면에 상호 적지 않은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辛圓·黃碩琳, 2013). 대륙붕에는 풍부한 천연자원이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중국입장에서 이 해역에 대

19) 2007년 08월 16일, <韓國各方試圖把中國領土蘇岩礁據爲己有>, 《金羊网-新快報》.

“根据1982年制定的國際公約規定, 大陸架是大陸邊緣在海底的自然延伸, 大陸國家最遠可擁有離海岸線200海里範圍內的大陸架。据此, 在中國主張的300萬平方公里的海洋國土中, 理所當然地包括黃海大陸架和東海大陸架。而韓國未經中國同意在黃海大陸架上勘探石油, 已損害到中國的海洋主權和海洋權益。”

20) 2006년 10월 25일, <韓媒体誣中國意圖搶奪其領土投巨資造暗礁島>, 《國際先驅導報》.

“東海面積77萬平方公里, 涉及中韓日三國。... 也就是說, 所謂“離於島”問題的背後, 涉及周邊黃海和東海海域豐富的海底資源歸屬的實際利益問題。”

21) 李靖宇·陳歡·許浩, 「關於中國海洋開發的國家權益安全戰略构想」, 『中國軟科學』第4期, 2013, 10쪽.

한 우수한 지리적 입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양국 모두 이 지역을 보다 소유·확장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쉽게 굽히려 들지 않을 것이다.

한중 간 해양구획 문제에서 중국의 태도는 “무엇보다 ‘이익극대화(利益最优化)’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²²⁾고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 양국 간의 우호적 관계유지를 주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해양자원 확보 및 국토확장을 통한 동아시아 내 헤게모니 장악의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과의 해양구획 논의에서 공동개발 카드를 쥐고 고민하고 있지만, 단 이는 일시적 협정에 한해서이다. 즉 중국은 주변국과의 동중국해 논쟁에서 해양자원 개발과 해양구획은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明廷權, 2008). 한국과의 해양 획정 논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동중국해에 대한 법률적 논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어야만 비로소 이 해역 내 해양자원 개발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권을 동시에 행사 할 수 있는 것이다. 공동개발을 위한 상호간 양해각서를 교환하는 식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과거 한일어업협정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실효성 역시 떨어진다. 중국에게 있어 공동개발은 최후의 보루(堡壘)일 뿐 최선책은 아닌 것이다.

중국이 이어도를 인지함에 있어 그 군사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劉亞丁, 2008).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황해와 동중국해가 접하는 교차점(交匯處)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중국해의 중심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입장에서 이는 산둥(山東) 반도와 요동(遼東) 반도 사이의 바다, 즉 보어하이(渤海) 그리고 동중국해 전체를 긴장케 하는 잠재적 위협 요소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중국은 이어도 해역의 군사·지리적 입지를 쉽게 간과할 수 없는 현재의 실정에 놓여있다. 이어도 해역의 지리적 강점으로 인해 한국은 한반도 서부지역을 보다 용이하게 보호할 수 있음은 물론 중국과 북한의 군사작전을 저지하는 한편 더 나아가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군사적 이점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이러한 현상이 현실화 될 그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이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군사훈련을 못마

22) 李軍·王傳劍, 앞의 논문, 78쪽.

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한미(韓美) 간 연합군사 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의 주장에 의하면, “이 해역에 대한 그 어떠한 유의미한 통제권(有效控制)을 행사할 수 없는 한국이 법리원칙(法理原則)을 저버린 채 중국의 해양권익(海洋權益)을 막무가내로 침해하고 있다(曹玮, 2012, p.95)”고 평가하고 있다.

3) 이어도 ‘논쟁’과 조어도 ‘분쟁’

현재 중국의 이어도 논쟁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일본과의 조어도 분쟁이다. 분쟁과 논쟁은 영어의 ‘dispute’으로 둘 간의 구분이 다소 모호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분쟁(糾紛)과 논쟁(論爭)은 철저히 구분된다. 논쟁은 쟁점 사안에 대한 설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반해 분쟁은 상호 간의 다툼, 싸움, 분규 등과 같이 적대적 관계 간 외부적 갈등, 저항을 모두 포함한다. 현재 한중 양국 간 이어도 문제가 논쟁이 아닌 분쟁 안에서 논의되어질 그 미래 가능성은 충분하다.

중국인은 조어도 해역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 영토 선포에 강렬하게 저항하고 있으며, 그 분노의 정도 역시 나날이 고조되어가고 있다. 중국 정부의 태도 역시 분명하다. 조어도 열도가 중국 영토임은 불변의 이치이며, 이에 대한 그 어떠한 예외사항이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吳慧, 2007). 1992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는 중국 대륙과 그 해안 도서지역, 대만 및 기타 조어도 해역의 부속 섬들을 포함함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²³⁾ 중국인은 본인들이 법률로 지정한 고유영토를 마치 일본의 침략행위로 다시 한번 빼앗겼다는 식의 분노를 공공연하게 표출하고 있다.

덧붙여 1974년 1월 30일, 한일(韓日) 양국은 제주도 동남방 약 8만 4000km²의 대륙붕에 대한 <한일대륙붕협정>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양국 모두 주변국인 중국정부에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 1974년 2월

23) ‘中華人民共和國的陸地領土包括中國大陸及其沿海島嶼、台灣及其包括釣魚島在內的附屬各島……以及其他一切屬於中國的島嶼’

4일 중국정부는 한일 양국 간의 이 협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였다.

“황해와 동해 대륙붕의 석유자원은 77억톤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카스피 해에 이은 전세계 3대 석유 생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황해 대륙붕에 대한 전면적인 탐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단지 이 중 일부 지역에 대한 해저석유 개발을 진행했을 뿐이다. 이에 한일 양국은 중국을 등한시 한채 이 해역의 해저자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상호공조를 형성하였다.”²⁴⁾

중국은 자신들의 대륙을 감싸고 있는 동중국해에 대한 공동개발 구획을 아무런 통지 없이 한국과 일본에 의해 단독으로 설정한 것에 크게 반발하였다. 중국은 당시 이 협정이 현재의 한중(韓中) 간은 물론 중일(中日) 간 동중국해 논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평가하고 있다(朱鳳嵐, 2006; 許碩, 2007).

현재 동중국해에 대한 중일간의 관계는 과거 해소되지 않은 일본을 향한 중국의 격한 분노와 양국의 경제적 실리가 뒤섞여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리양용(梁咏, 2006)에 의하면 동중국해에서 일본과의 갈등에 있어 최소한 다음의 4가지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첫째 해양자원의 개발권 문제이다. 동중국해의 풍부한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둘째 이 해역에 대한 관할권 문제, 즉 국가안전문제이다. 동중국해는 한중일 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유일한 지역인 만큼 지리적으로 상대 국가를 견제·관찰할 수 있는 뛰어난 관제탑 역할을 수행하기에 용이하다. 셋째 조어도 열도의 주권 귀속문제으로써 영토문제이다. 양국 간의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써 단순히 이 지역에 대한 개발권 조정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넷째 중일 양국을 포함한 주변 다른 국가들과 유사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원칙이 없다는 부분이다. 이는 해양 획정선을 그을 때 자연연장선원칙 또는 등거리원칙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

24) 2007년 08월 16일, <韓國各方試圖把中國領土蘇岩礁據爲己有>, 《金羊网-新快報》.
“黃海和東海大陸架的石油資源達77亿吨, 很可能成爲繼里海之后全球第三大石油產區。對黃海大陸架基本未進行全面勘探的韓國, 借此邁出開發海底石油的第一步, 由此形成了日韓向背靠中國的大陸架底土資源挺進的局面。”

지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이를 모든 관련 해양영토 분쟁에서 균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한중 간의 이어도 논쟁에 있어서 상술한 4가지 문제 중 세 번째 주권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국 간의 조정 또는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를 다시 보면 중국이 일본과의 조어도 문제에 대처하는 자세는 이후 한국과의 이어도 논쟁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일 양국은 2000년 양국 간 동해 해역 내 어업협정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해양문제를 풀어나가는 나름의 제스처를 취하기는 했지만,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1960년대 동해 해역 내 풍부한 해저석유 매장량을 확인한 이래 이 해역 내 해양권의 문제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2000년 중일 간 ‘동해대륙붕어업협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양국 간 어업자원 관리 방면에 상호 공감대를 확인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다. 하지만 동해 내 도서해역 귀속 문제와 해양획정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을 도출해내지는 못하였다. 중국의 주장에 따르면 자연연장선 원칙으로 동해 대륙붕을 획정하는 것은 ‘UN국제해양법조약’에 부합된다지만, 일본 측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중심선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다. 양국의 해양획정 원칙이 너무도 상이하다보니 이 해역에 대한 획정문제가 짧은 기간 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²⁵⁾

이를 통해 동해 해역에 대한 중일 상호 간의 입장차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두 국가가 모두 이 해역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선불리 자신의 주장을 먼저 굽힐 생각은 없다. 각자의 이익을 최대한 하되, 각국의 해양원칙 및 국민정서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25) 2006년 10월 26일, <海洋資源被非法掠奪 中國海洋安全面臨挑戰>, 《河南商報》.

“上个世紀60年代末以來，由于在東海海域發現了巨大的海底石油蘊藏，東海海洋權益問題凸顯出來。盡管2000年中日“東海大陸架漁業協定”生效，雙方在有序管理漁業資源方面達成了初步共識，但東海島嶼歸屬和海域划界問題尚未得到解決。中國主張根據自然延伸的原則來划分東海大陸架是符合《聯合國海洋法公約》有關規定的。而日本方面則主張採用所謂“中間線”來划分。由于兩國原則立場上存在重大分歧，划分東海海域疆界成爲一個在短時間內難以解決的、夏雜棘手的問題。”

러한 중국의 대응자세를 근거로 일본을 한국으로 대치하였을 때의 상황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중일 관계와 비교해서 그렇게 큰 변화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중국의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원칙은 일괄적으로 강경할 것이며, 대화와 타협보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해양획정 문제를 풀어 가려 할 것이다.

Ⅲ. 이어도 논쟁과 한국의 자세

1. 한국의 이어도 연구

초기 이어도²⁶⁾ 관련 연구는 이어도 암석의 유래와 이 해역에 대한 해양학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공훈(1985)은 당시 이어도 해역 내 인공섬 축조 관련 논의가 오고가는 동안 파랑도와 이어도라는 말이 자주 나옴을 지적하며, 실제 이어도는 해도에 ‘Scocotra rock’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적고 있다. 이 명칭의 기원은 1900년 6월 5일 영국기함 Socotra호가 이어도 암초와 접촉사고를 일으킨데 대하여 보고를 접한 영국 해군성 수로국에 의해 명명되었다. 하지만 당시 이어도는 실재하지 않는 섬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 환상의 섬과 실재하는 ‘Scocotra rock’ 간 간극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곳은 현실에서 멀리 떨어진 신화적 공간으로써, 현실도피의 초월적 공간인 유토피아로 그려지거나(최혜실, 1994), 반면에 우리나라의 남해, 중국의 동중국해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한중일 삼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이용희, 1999).

이어도의 해양학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초기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부여는 2003년 6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완공 이전 연구들, 특히 기지건설 기획단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한상

26) 이어도는 동중국해 중앙에 있는 수중암초(수심 40미터 기준 면적: 약40만m²)로 동경 125도 10분 56.81초, 북위 32도 07분 22.63초에 있다. 이는 한국의 최남단 도서인 마라도에서 서남방으로 149.3km, 일본의 도리시마(鳥島)에서 서쪽으로 276km 그리고 중국의 서산다오(佘山島)로부터 북동쪽으로 287km 떨어져 있다.

복(1991)은 이어도 해역에 각종 어선의 어로활동이 활발한데, 갑작스런 안개발생이 잦아서 항해선박에게 안전항해를 유도하기 위한 고정등대, 혹은 해양 구조물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효과적인 어로활동, 태풍의 조기경보를 위한 매시간별 관측자료 수집 등을 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권문상(1988)은 이러한 해양구조물의 국제법적 지위를 대륙과의 거리-영해, 배타적경제수역, 공해-별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 해양구조물 정의가 가변적임으로 해서 법적지위, 이용수단에 근거해 정의 내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배타적경제수역 내 해양구조물의 경우 이 지역을 운행하는 선박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가능함을 적고 있다. 이동영·심재설(1991)의 초기연구에서 역시 이 해역의 기후학적, 지리학적 측면에서 해양구조물 건설의 당위성 및 단계적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웃나라와 외교상의 분쟁, 이어도 해역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 건설 이후 유지, 보수 그리고 건설비용문제 등의 고려사항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이어지는 후속연구에서는 이어도 해역 또는 이어도 해양 과학기지에 대한 법적지위가 영토분쟁의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김태영·이석용(2011)은 중국의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심을 국제법에 근거한 해양관할권 및 자원개발 이외에 국제정치 및 안보 관련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계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이어도는 중국해군이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동시에 태평양 연안국의 해상 교통로 확보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고봉준(2013)은 중국은 물론 일본의 내적 요인에 의해서 독도와 이어도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양국의 국내정치 상황의 전개가 향후 해양영토 문제에 대한 전망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것임을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국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 시 이어도가 우리나라의 해양관할수역에 위치하게 되는 것은 확실하다(김태영·이석용, 2011). 그러므로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는 독도 문제는 일정 영토에 대한 영유권 차원에서 반면 이어도 문제는 관할권 문제로 해당국 간의 첨예한 대립을 풀어가야 할 것이다(고봉준, 2013). 결과적으로 영유권 문제는 현재 논쟁 중에 있는 영토가 어느 일방에 귀속되는가를

판단하는 문제이고, 이어도와 같이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영해 이외의 지역에 대한 논쟁은 해양이용과 관련한 배타적권리의 문제인 것이다 (강효백, 2009).

2. 이어도 논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앞서의 논의들을 통해 이어도 논쟁에 대한 중국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고, 현재 한중 양국의 중요한 이슈인 이어도 영유권 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이어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귀속문제가 아닌 외교, 국방, 자원, 경제에 걸쳐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핫이슈이다. 이는 한중 양국 간 우호적 관계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해서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어도를 다루는 관점에 대한 연구분석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중국의 이어도에 관한 정책을 중국어 자료를 통해 고찰하여 이 지역의 영유권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향후 유사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는 데에도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실제 독도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독도를 다루고 있는 입장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확실치 않아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중심으로 앞으로 한국의 이어도 논쟁에 대한 대응자세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은 한국 역시 이어도 해역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 한국입장에서 이어도 주변 해역은 지리적, 경제적,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여 이 해역에 대한 야욕을 쉽게 접지 않을 것을 예측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첫째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어업자원이 풍부하지 않다. 따라서 이어도 해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곧 동중국해 풍부한 어업자원을 한국 관할권으로 귀속시키려는 의도적 행위이다. 둘째 한국은 영토가 넓지 않아 천연자원 매장량이 충분하지 않다. 근현대 짧은 기간 내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지만, 앞으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어도 해역 내 매장되어 있는 잠재적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 77억톤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

다. 셋째 이어도 해역은 한중일 삼국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절대적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 이 해역은 주변국을 감시·견제 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어도는 동중국 해역에 대한 관제탑 역할을 수행하기에 최적의 위치를 자랑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이어도 해역으로의 영토 확장 노력은 이 해역에 대한 소유욕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⁷⁾

중국입장에서 한국의 이어도 해역에 대한 인식정도 그리고 이 해역에 대한 활용 의지가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역사적 사료들과 객관적 자료들이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중 각 국에서 이어도까지의 물리적 거리, 역사적 고증자료 그리고 양국민의 이어도에 대한 인식 및 이를 매개로 한 문화현상까지 중국에게 유리한 것이 하나 없다. 이를 외부로 알려 국제사회의 중재역할을 기대하고자 하는 그 의지는 상당하나 이 또한 선불리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중국해역을 둘러싼 모든 국가들과 영토분쟁 중인 현 상황에서 이어도 논쟁까지 국제분쟁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중국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일 수 있다(張光, 2007). 하지만 이어도 논쟁과 관련하여 결정적 반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 이와 같은 최종의 히트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러한 전반적 흐름 변화는 조어도 논쟁에서 중국이 일본에 취하는 태도를 통해 예측 가능하다. 첫째 중국은 이어도 해역에 대한 공동개발 카드를 꺼내들 확률이 높다(劉中民·劉文科, 2006). 해양획정 문제는 짧은 기간 내 해결 할 수도 없고, 관련국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이어도 문제를 현재와 같이 언젠가 해결될 과제로 남겨두고, 이 해역의 천연자원에 대한 공동개발을 제안해 올 가능성이 높다.

둘째 만일 양국 간 협조체계를 통해서 이 해역에 대한 문제가 풀릴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이를 과감히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갈 확률이 높다(王德水, 2007). 이렇게 되면 중국은 국제여론이 중국과 주변국과의 해양획정 논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양국 간 끝없는 외교 줄다리기로 체력을 소비하기 보다는 상대적으

27) 劉亞丁, 「蘇岩礁的法律地位及其意義(이어도의 법률상의 지위 및 그 의의)」, 『世紀橋』第3期(總第149期), 2008, 68-69쪽.

로 신속한 결과를 도출할 목적으로 국제법에 의지하려 할 수 있다.

셋째 중국 국민의 이어도보호운동(保蘇運動)²⁸⁾ 의식을 직·간접적으로 고취시킬 확률이 높다(張錦文, 2008). 실제 2006년 말 당시 중국사회과학원의 서아시아 및 아프리카연구소(中國社會科學院西亞非洲研究所)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던 왕지엔썩(王建興)은 이어도수호협회(保衛蘇岩礁協會) 설립을 위해 지원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이러한 민간 차원의 움직임은 국민정서를 자극하기에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들의 자율성을 이끌어 내 이어도 논쟁을 반한감정으로 확산시켜, 이들의 애국심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넷째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점차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張錦文, 2008). 중국이 이어도 해역에 대한 대륙붕 연장선을 근거로 이 주변해역에 자신들의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물론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가까운 미래에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현재 이어도 해역에 대한 중국의 탐사 및 순찰, 경계가 강화되고 빈번해진 것은 기정사실이다.

앞으로 중국의 이어도 논쟁에 대한 향후 움직임을 주시하며, 이에 맞는 적절한 정치, 행정 그리고 문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역사사료에 대한 근거제시를 요구해야 하며, 잘못되고 왜곡된 중국어 자료, 즉 공문서, 언론, 포털사이트, SNS 등에 실린 이어도 관련 내용에 대한 수정요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이에 대한 감시·감독 또한 중요한데 우선적으로 이어도 및 이 해역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면 이어도연구회와 같은 전문기관을 보다 활성화 하고,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과학자료 활용도 증대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과 한국의 이어도에 관한 대응방식과 양국학계의 시각차이 등을 구체화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응방안을

28) 이는 과거 조어도를 보호하기 위한 조어도보호운동(保釣運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1970년 대만과 홍콩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조어도 보호운동을 계기로 해서, 1996년 홍콩 내 조어도보호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후 일부 민간인들이 2003년, 2004년 개인어선을 이용해 조어도 해역에 진입을 시도하는 등의 일을 벌였다. 이들 또는 이를 지지하는 집단은 현재까지도 이 해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이어가고 있다.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이어도 논쟁과 관련해 중국과의 관계에서 추진/추구해야 할 바 등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근거로 만약 한국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공론화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 중국의 이어도 논쟁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과 이어도의 관계에서 도서지역인 제주도의 지위를 평가절하하며, 심지어 한국을 이어도 해역에 대한 영토주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불법점거자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학술논문에서보다는 일반 언론보도에 의해 더 부각되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 해역 내 건설된 이어도 과학기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한국 측의 주기적 관측활동 및 순시, 경계 임무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 이에 대한 중국 측의 대응자세는 즉각적으로 한국의 관련 행위를 비난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는데 머뭇거림이 전혀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결론은 이어도 해역에 대한 중국의 관할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언론매체에 의해 공론화 되기도 있지만, 이를 연구하는 관련 학자들의 연구논문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무엇보다 순수 연구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는 연구논문이 중국정부의 선전·선동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가 든다. 객관적인 자료제시도 미흡할뿐더러 중국정부의 입장이 곧 연구자의 연구목적인 것처럼 겹쳐 보이기까지 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생각들이 어떻게 담론화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예측에 너무도 소홀했다. 보다 나은 양질의 이어도 연구를 위해서라도 중국 언론 및 중국학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다 세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이들 언론인과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작성된 중국어 자료들을 근거로 한다면 중국정부의 이어도 논쟁에 대한 입장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측 입장에서는 중국 측의 자극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례로 이어도 논쟁을 일본과의 조어도 분쟁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그 대응정도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이들에게 이어도 문제는 아직까지 '논쟁'일 뿐이지 '분쟁'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들의 이러한 상대적 소극성을 보다 현실적 시각에서 해석하면, 다음의 두 가지 주요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첫째 한국이 건설한 이어도 과학기지가 갖는 의미, 둘째 등거리원칙에 근거한 해양구획이 본인들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劉亞丁, 2008). 이어도가 조어도와는 달리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지가 아닌 상황에서 거리는 물론 이 지역에 한국 자본과 기술력으로 건설되어진 해양과학기지가 이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중 양국 간 해양구획 논쟁은 외면할 수도 없고, 외면한다고 쉽게 해결되는 문제도 아닐 것이다. 양국 모두 상호 간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와 더불어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로 인해 양국이 대면하고 있는 모든 해양구획 획정문제에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해 방황할 수 있다. 그 갈등의 불씨가 점점 커져 양국의 우호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양국민의 인식 역시 자국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고, 이는 더 나아가 상대 국가에 대한 혐오감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李軍·王傳劍, 2010).

실제 한중 양국 간 영토논쟁은 물론 역사귀속 문제, 문화마찰 등의 일련의 갈등들에서 양국 간 적지 않은 충돌과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許壽童, 2014).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고대 고려사 귀속문제와 관련하여 양국 간 '역사전쟁'이 발생했었다. 사후 양국 정부의 협상 노력 끝에 역사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 것을 상호 결의하고서야 비로소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들어선 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단오절, 아리랑의 문화유산 등재 문제 그리고 공자 등 일부 역사 인물과 관련된 문화마찰이 양국의 우호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 이어도는 물론 백두산, 간도 지역에 대한 주권 인식문제 역시 양국 간 잠재하고 있는 갈등의 불씨 요인으로 남아 있다.

중국인 입장에서는 중국이 한중 양국과의 해양영토 분쟁에서 자신들

의 주장을 굽히는 모습을 곧 국가와 인민의 주권권리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다(張衛彬, 2010). 이어도 논쟁에 대한 한국의 국민정서 또한 강경하기는 마찬가지이다. 2013년 외교부 대변인의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영토가 아니다’라는 발표에 이를 접한 한국 국민은 분노했다. 이어도는 영토 문제가 아니라 이어도 주변 수역의 관할권 사용 문제, 즉 배타적인 경제수역 문제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이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신화의 섬, 이어도에 대한 객관적 사실 이상의 감성을 이미 이 곳 이어도에 싣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영토문제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이상으로 국민정서와 국가체면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보다 신중한 문제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본 연구가 중국인에 의해 작성된 이어도 논쟁에 대한 중국어 자료를 우리의 시각으로 정리·분석하는 나름의 의미 있는 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하지만 해당 자료들을 한데 모아서 풀어 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우선 관련 자료를 전수조사를 목표로 수집하는 과정이 시간적으로 오래 걸렸고, 이를 유사 주제로 묶어내는 작업 역시 적지 않은 노력을 필요로 했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찾아내는 작업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후 보다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활용하여 본 연구 이상의 기대효과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어도 관련 중국어 자료를 수집하는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중국 관련 정부기관의 내용들을 들여다보았으면 한다. 그리고 인터넷 자료와 더불어 종이자료에 대한 검토가 추가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이어도 논쟁에 대한 중국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면,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와 더불어 중국과 주변국가 간 해양 분쟁-남사군도 및 조어도 분쟁 등-을 상호비교할 수 있는 교차 비교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강효백, 「한중해양 경계획정 문제: 이어도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14(1), 2009.
- 고봉준, 「독도·이어도 해양영토분쟁과 한국의 복합 대응」, 『한국정치연구』 22(1), 2013.
- 김태영·이석용, 「국제법상 도서제도와 이어도의 법적지위」, 『사회과학연구』 20(2), 2011.
- 김현정, 「200해리 이원 대륙붕 제도의 두 가지 쟁점」, 『국제법평론』 35권, 2012.
- 권문상, 「海洋構造物の 國際法的 地位에 관한 考察」, 『해양정책연구』 3권, 1988.
- 이동영·심재설, 「波浪島 海洋科學基地 構築에 관한 考察」, 『해양정책연구』 6권, 1991.
- 정공훈, 「Socotra礁의 由來에 대하여」, 『탐라문화』 4권, 1985.
- 이용희, 「이어도 주변수역 자원 관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 『경희법학』 44(3), 2009.
- 최혜실, 「이어도에 나타나는 유토피아의 공간성과 시간성」, 『한국어교육학회지』 83권, 1994.
- 한상복, 「해양학에서 본 ‘파랑도’의 가치」, 『해양정책연구』 6권, 1991.
- 曹玮, 「韓國在爭議海區‘搶先下手’有失公平原則－從國際法角度評析韓國‘作爲’(해양 획정 논쟁에서 한국의 ‘발빠른 움직임’의 형평의 원칙 부재-국제법 시각에서 평가한 한국의 ‘행위’)」, 『太平洋學報』 第20卷 第3期, 2012.
- 馮潔菡, 「大陸架的權利基礎: 自然延伸与距離標準(대륙붕의 권리기초: 자연연장선과 등거리 기준)」, 『法學論壇』 第25卷(總第131期), 2010.
- 傅成, 「中國周邊大陸架的划界方法与問題(중국 주변 대륙붕의 획정 방법과 문제)」, 『中國海洋大學學報』 第3期, 2004.
- 韓增林 外 4, 「海洋地緣政治研究進展与中國海洋地緣環境研究探索(해양지역 정치 연구 발전과 중국 해양지역 환경 연구 탐구)」, 『地理科學』 第35卷 第2期, 2015.
- 何蘭, 「中國的海洋權益及其維護(중국의 해양권익 및 그 수호)」, 『思想理論教育導刊』 第10期(總第142期), 2010.
- 李靖宇·陳歡·許浩, 「關於中國海洋開發的國家權益安全戰略构想(중국 해양개발의 국

가권의 안전전략 구상」, 『中國軟科學』 第4期, 2013.

李軍·王傳劍, 「中韓相鄰海洋權益問題研究(한중 인근 해양권의 문제 연구)」, 『太平洋學報』 第18卷 第12期, 2010.

李毅, 「論澳巴海洋邊界划分方法之特色及其對中日東海海域划界之借鑒意義(오스트레일리아-파푸아 해양경계 획정 방법의 특색 및 이 사건이 중일 동중국해 해역 획정에 주는 시사점)」, 『東北亞論壇』 第14卷 第3期, 2005.

梁咏, 「從國際法視角看中日東海大陸架划界爭端(국제법 시식에서 본 중일 남중국해 대륙붕 획정 논쟁)」, 『法學』 第8期, 2006.

劉亞丁, 「蘇岩礁的法律地位及其意義(이어도의 법률상의 지위 및 그 의의)」, 『世紀橋』 第3期(總第149期), 2008.

劉艷, 「從中日東海之爭談我國海洋權益的維護(중일 동중국해 지역 논쟁을 통해 본 중국의 해양권의 수호)」, 『海洋開發与管理』 第2期, 2006.

劉中民·劉文科, 「近十年來國內釣魚島問題研究綜述(최근 국내 조어도 문제 연구에 대한 서술)」, 『中國海洋大學學報』 第1期, 2006.

明廷權, 「國際法視野下的中日東海爭端(국제법 시각 하에서의 본 중일 동중국해 논쟁)」, 『長春師範學院學報』 第27卷 第1期, 2008.

孫傳香, 「中日東海划界之中間線方案: 問題与評析(중일 동중국해 획정에서의 중간선 방안: 문제와 평가)」, 『廣東海洋大學學報』 第30卷 第2期, 2010.

万震, 「海洋划界規則比較研究(해양 획정 규칙 비교연구)」, 『佳木斯教育學院學報』 第6期(總第102期), 2010.

王秋雯·姜政揚, 「島嶼在海洋划界中的效力問題研究-從國際法理論與實踐看釣魚島与中日東海划界(해양 획정에서의 도서(지역)의 권리문제 연구-국제법이론과 실천을 통해서 본 조어도와 중일 동중국해 획정문제)」, 『太平洋學報』 第20卷 第4期, 2012.

王德水, 「從國際法視角看中日釣魚島主權爭端(국제시각에서 살펴본 중일 조어도 주권 논쟁)」, 『海洋開發与管理』 第4期, 2007.

吳慧, 「國際海洋法爭端解決机制對釣魚島爭端的影響(국제해양법 논쟁해결기구가 조어도 논쟁에 미치는 영향)」, 『國際關係學院學報』 第4期, 2007.

辛圓·黃頌琳, 「中韓海洋權益問題研究(한중 해양권의 문제 연구)」, 『上海海洋大學學報』 第22卷 第3期, 2013.

許碩, 「中日東海划界問題之關鍵-沖繩海槽的法律地位(중일 동중국해 획정문제의 관건-오키나와 해구의 법률적 지위)」, 『中州大學學報』 第24卷 第4期, 2007.

- 許壽童, 「日本の歴史認識問題と東亞國家的應對策略(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와 이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의 대응전략)」, 『東疆學刊』 第31卷 第2期, 2014.
- 楊紅偉, 「國際法視角下的中韓蘇岩礁之爭(국제법 시각 하에서의 한중 이어도 논쟁)」, 『法治視野』 第6期, 2009.
- 詹德斌, 「海洋權益角力下的中韓漁業糾紛分析(해양권익 힘겨루기 (상황)에서의 한중어업분쟁 분석)」, 『東北亞論壇』 第6期(總第110期), 2013.
- 張錦文, 「關於釣魚島問題的分析与思考(조어도 문제에 대한 분석과 사고)」, 『前沿』 第2期, 2008.
- 張光, 「公平原則在大陸架划界中的适用(대륙붕 획정 중 형평의 원칙의 활용)」, 『河南公安高等專科學校學報』 第4期(總第95期), 2007.
- 張衛彬, 「海洋划界的趨勢与相關情況規則-黑海划界案對我國海域划界的啓示(해양 획정의 추세와 관련 환경 (고려) 규칙-흑해 획정 사안이 중국 해역 획정에 시사하는 점)」, 『華東政法大學學報』 第2期(總第69期), 2010.
- 周江, 「論海洋划界中的島嶼效力(해양 획정 중 도서(지역)의 효력)」, 『江蘇社會科學』 第2期, 2011.
- 朱鳳嵐, 「‘日韓大陸架協定’及其對東海划界的啓示(‘한일대륙붕협정’ 및 이 협정이 동중국해 획정에 시사하는 점)」, 『當代亞太』 第11期, 2006.

Abstract

The study on the Chinese cognition and the Korean countermeasures for Socotra rock dispute -focused on major issues on Chinese language material

Ju, Min-uk*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Chinese attitude of Socotra rock dispute. This article tried to predict potential conflicts between two countries from the analysis on Chinese cognition of Socotra rock dispute.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analyses Chinese research papers and newspaper articles about Socotra rock dispute.

Socotra rock and the surrounding area are perceived that it has a plenty of natural resources and fisheries resource. This area is also located in a important area which affects the both countries's security. It is hard to draw clear a maritime boundary line of demarcation between China and S. Korea. China insists on the equitable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 natural prolongation. However S. Korea insists on equidistance principle.

The conflict of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in Eastern Asia is not simple issue that international law intervenes in. As the implications of a Sino-Japanese controversy over Diaoyudao Island today, China would not give up easily the jurisdiction of Socotra rock.

* Lead Author, Ph.D. Wuhan National University.

In the East China Sea issue, China will take a hardline stance and express their own opinions directly. We need to understand their positive attitude over the dispute of Socotra rock issue. We should prepare the present with objective discourse data to counter their opinions without affecting the principles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nd people emotion of both countries.

Key Words : China, Socotra rock dispute, maritime boundary line of demarcation, the principle of natural prolongation, the equidistance principle.

교신 : 주민욱 630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7길 15
(E-mail : jjoo9993@hotmail.com)

논문투고일 2016. 04. 26.

심사완료일 2016. 06. 10.

게재확정일 2016. 06. 13.